

# 삼양통상(주)

002170 | KOSPI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5. 03. 27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Executive Summary

▶ 삼양통상은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삼양통상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은 감사 정원을 1명 이상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주주제안에 의해 상정된 제4호 감사 선임의 건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안으로 판단된다. 현재 삼양통상은 1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므로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이 가결되어 감사 정원이 1명으로 축소될 경우 자동적으로 주주제안에 의한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사회 의도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아울러 현재 재직중인 감사가 40년 가까이 재직했을 뿐만 아니라 삼양통상의 고문으로 재직한 경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감사로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전체 권익을 위해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4호 의안인 신규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b>제1호</b>	<b>정관 일부 변경의 건</b>	<b>찬성</b>	<b>반대</b>
제2호	제5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정대락 신규 선임의 건	찬성	찬성
<b>제4호</b>	<b>감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의안)</b>		
<b>4-1</b>	<b>감사 강상순 신규 선임의 건</b>	<b>반대</b>	<b>찬성</b>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제6호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본 회사에는 이사 3명 이상 <b>감사 1명 이상</b> 을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본 회사에는 이사 3명 이상 <b>감사 1명</b> 을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인원수 변경

▶ 제2호 의안 : 제54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안)

이사회 : 1주당 배당금 750원 / 주주제안 : 1주당 배당금 5,000원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사내이사	정대락	1959.12.12	3	신규선임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삼양통상(주) 전무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감사	강상순	1971.05.13	3	신규선임	비상근	-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졸업 - LG유플러스 네트워크팀장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원	10억원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삼양통상 이사회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감사 정원을 1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사실상 감사 수를 축소하고자 함
- 감사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고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므로 감사 정원 축소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 의견을 권고함
- 아울러 삼양통상 이사회의 감사 정원 축소 제안은 주주제안에 따른 제4호 의안 감사 신규 선임의 건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이므로 이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막고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주주 전체의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Discussion

#### Proposal

#####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본 회사에는 이사 3명 이상 <b>감사 1명 이상</b> 을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본 회사에는 이사 3명 이상 <b>감사 1명</b> 을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인원수 변경

### Analysis

##### ▶ 기업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정관 일부 변경 제안

삼양통상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감사의 정원을 1명 이상에서 1명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사실상 감사 정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감사의 주된 역할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최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자원과 이익 배분의 최적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감사 정원의 축소는 사실상 기업 지배구조의 후퇴를 의미하므로 이는 주주 가치 향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사회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의도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에 따라 상정된 제4호 감사 신규 선임의 건과 연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바라는 외부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 감사 선임의 건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는데, 만약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이 가결될 경우, 현재 삼양통상은 1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므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제4호 감사 신규 선임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은 사실상 주주제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하는 이사회의 결정은 삼양통상의 기업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자원과 이익 배분에 대한 시장과 주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당부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255억원 가량 증가해 총 자산은 약 2,990억원 수준, 부채는 약 173억원 증가한 765억원 수준이며, 자본 총계는 약 82억원 증가한 2,225억원 기록
- 연결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27억원 증가하여 약 1,991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78억원 증가하여 약 96억원 달성.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68억원 증가하여 약 102억원 달성
-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은 전년 대비 약 245억원 가량 증가해 총 자산은 약 2,908억원 수준이며 부채는 약 166억원 증가한 752억원 수준.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약 79억원 증가한 2,156억원 달성
- 개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42억원 증가하여 1,97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84억원 가량 증가해 86억원 달성.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82억원 증가하여 약 101억원 달성
- 이사회가 제안한 배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주당 750원이며 이 경우 배당금 총액은 약 22.5억원. 주주제안에 따른 배당금은 주당 5천원으로 이 경우 배당금 총액은 약 150억원 수준
-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권고하고 배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익 달성으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1,563억원에 이르지만 2014년 당기순이익이 약 101억원 수준이고 이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150억원의 배당금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됨. 다만, 지속적인 창출되는 이익을 주주 전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이사회 노력에 당부함

### Discussion

### Analysis

#### ▶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14년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총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27억원 증가하여 약 1,991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원가 절감 등으로 영업이익 역시 약 78억원 증가하여 약 96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수익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68억원 증가하여 약 10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순이익 증가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본 총계는 전년 대비 약 82억원 증가한 2,22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부채가 약 173억원 증가하여 총 자산은 전년 대비 약 255억원 증가한 2,990억원을 달성하였다. 개별 재무제표 역시 전년 대비 매출은 약 342억원 증가하여 1,97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4억원, 82억원 증가하여 86억원의 영업이익과 1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주당 750원 배당 계획을 상정하였으며, 이 경우 총 배당금은 22.5억원이다. 그러나 일부 주주의 제안에 따라 주당 5천원의 배당 계획이 함께 상정되었으며, 이 경우 총 배당금은 150억원에 달한다.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이익 달성으로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 약 1,563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으나 2014년 당기순이익이 101억원 수준이고, 이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주제안에 따른 총 150억원의 배당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당에 대해서는 이사회 제안에 찬성을 권고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익 공유에 대해 이사회와 주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성과를 주주 전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삼양통상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중인 정대락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자 함
- 정대락 전무는 재경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27년간 재직하여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정대락 사내이사 신규 선임 후보자에 대해서 이사회의 제안을 존중하여 찬성 의견을 권고함
- 다만, 삼양통상 이사회가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번에 신규 선임 후보자인 정대락 후보자를 제외하면 최대 주주인 허남각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인 허광수 이사만으로 사내이사가 구성됨. 이사회가 과도하게 최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허남 각 이사와 허광수 이사가 계열회사 등에서 이사 등을 다수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 기능의 강화를 권유함.

### Discussion

#### Proposal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사내이사	정대락	1959.12.12	3	신규선임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삼양통상(주) 전무

### Analysis

▶ 최적의 의사 결정을 위한 이사회 강화 필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사내이사 신규 선임 후보자 정대락은 삼양통상에서 약 27년간 재직하며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며, 현재 미등기 전무이사로서 재경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정대락 후보자가 삼양통상에 장기간 재직하며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애사심이 높은 인물이며 재경 부문을 담당하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사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정대락 사내이사 신규 선임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다만, 현재 삼양통상 이사회는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최대주주인 허남각 대표이사와 그 동생인 허광수 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이사회 기능과 권한이 상당 부분 최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허남각 대표이사는 삼양인터내셔널 등 4개의 타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허광수 이사 역시 삼양인터내셔널 등 7개 타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겸직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삼양통상 이사회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과도한 겸직 등으로 회사의 자원과 이익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삼양통상의 기업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이사회 운영은 다소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유능한 인재 등이 두루 이사회에 가세하여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주주제안으로 강상순 후보자가 비상근 감사 신규 선임 후보자로 상정됨
- 강상순 후보자는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후보이므로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어 이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균형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함
- 현재 삼양통상은 이선호 사외이사과 김태영 감사를 선임하여 중립적인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김태영 감사의 경우 재직기간이 40년이 넘고 회사 측도 김태영 감사가 고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는 사내이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서울대 상대 출신인 이선호 사외이사는 삼양통상의 최대주주인 허남각 대표이사과 동문이며, 나이 차이 역시 1살에 불과해 최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확고한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삼양통상 이사회의 사외이사 및 감사 기능이 상당 부분 무력화 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Discussion

Proposal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감사	강상순	1971.05.13	3	신규선임	비상근	-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졸업 - LG유플러스 네트워크팀장

Analysis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립적인 감사 선임

주주제안에 따라 비상근 감사 신규 선임 후보자로 상정된 강상순 후보자는 삼양통상의 최대주주 및 현 경영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가능 등 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강상순 후보자가 감사로 신규 선임된다면 삼양통상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균형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강상순 후보자의 비상근 감사 신규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게다가 현재 삼양통상은 김태영 상근 감사와 이선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영 상근 감사는 재직기간이 40년이 넘고 회사 측이 김태영 감사를 고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감사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는 사실상 사내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리고 이선호 사외이사가 39년생에 서울대 상대 출신이고 삼양통상 최대주주인 허남각 대표이사가 38년생에 서울대 상대 출신임을 고려해 보면, 같은 시기 동문수학한 동문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이선호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확고한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현재 삼양통상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신규 선임을 통해 이러한 삼양통상의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전년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4명에 대해 10억원으로 이사 보수 한도를 유지하고자 함
- 2014년 3분기까지 이사 보수 지급액은 약 4억원이며, 2013년에는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이사 3명에 대해 10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5억원을 집행하였음(기타비상무이사 1명은 무보수)
- 이사 수 및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 그리고 과거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 보수 한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함
-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1명에 대해 1억원의 감사 보수 한도 의안을 상정
- 2014년 3분기까지 감사 2명에 대해 지급한 보수는 약 3천만원 수준이며, 2013년 감사 1명에 대한 보수한도 1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규모는 약 3천만원 수준
- 감사 수 및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과거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고려해 볼 때 감사 보수 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권고함

### Discussion

#### Proposal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4(1)	<b>4(1)</b>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원	<b>10억원</b>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b>1</b>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b>1억원</b>

#### Analysis

▶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삼양통상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이사 4명에 대해 10억원이다. 삼양통상이 2014년 3분기까지 지급한 이사 보수액은 약 4억원 수준이며, 2013년에는 사외이사 1명 포함해 이사 3명에 대해 10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약 5억원을 집행하였다.(기타비상무이사 1명은 무보수) 보수 한도 및 보수 지급 내역에 큰 변동이 없으며 보수 한도 대비 집행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감사 보수 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 1명에 대해 1억원의 보수 한도 의안을 상정하였다. 2014년 3분기까지 감사 보수 지급액은 약 3천만원이며, 2013년에는 1명의 감사에게 보수 한도 1억원 가운데 약 3천만원을 집행하였다. 감사 수 및 보수 한도 수준에 큰 변동이 없고 보수 한도 대비 집행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권고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http://www.navistock.com)